

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『중도 우전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』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1일

신 안 군 수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- 가. 용역명: 중도 우전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- 나. 시행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- 다. 용역사업의 주요내용

- 1) 용역위치 및 과업내용: 과업지시서 참조
- 2)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12개월
- 2) 입찰예정시기 :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

라. 용역금액: 1,773,000,000원(VAT 포함) / 1차분 1,000,000,000원(VAT포함)

※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사업수행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,
- 나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(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)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,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(항만·해안, 구조, 토질·지질)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(항만·해안, 구조, 토

질·지질)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.

다. 【조사 측량 과업수행자】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

라. 【지질조사 과업수행자】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(토질·지질)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건설부문(토질·지질)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

※ 측량 및 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(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 : 8115160401, 지질조사 및 탐사 사업 세부품명 : 8115179901)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.

☞ 단, 중·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(<http://www.smpp.go.kr>)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.

마. 공동도급계약

- 1) 본 용역은 상기 자격(가,나,다,라항)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, 공동이행방식+분담이행방식, 분담이행방식)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,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, 2026.07.01.)」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가점을 적용합니다.
- 2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- 3) 측량, 지질조사 분야는 공동도급(분담이행방식)으로 수행하며,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합니다.(지역가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)

※ 분담비율

구 분	엔지니어링	측 량	지반조사	비 고
비 율	88.41%	5.02%	6.57%	내역서상 비율
시·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	엔지니어링 부문 100% 적용	-	-	

주) 시·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 부문을 100%로 기준하여 30%이상 참여시 배점적용

- 4)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, 2026.07.01.)에 따라 참여비율 점수를 부여합니다.
- 5)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.

3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

가. 작성안내서 등 교부

: 조달청 나라장터(<http://www.g2b.go.kr>) 게시로 같음(별도교부 없음)

나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

- 일 시 : 2026년 08월 31일(월요일) (10:00~17:00)
- 장 소 : 신안군청 섬발전진흥과 (061-240-8417)

※ 주 소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, 신안군청 6층

- 제출서류

-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(공문) 1부
-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, 평가서 전자문서 USB 1개)
- ③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

(2부는 평가서에 포함,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1부는 회사명 표기 제출)

- 제출양식 :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

다. 제출방법 : 직접제출(우편, 팩스, 퀵서비스 등 불가)

※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함.

라.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
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.
-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.
- 사용인감 신고서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
- 공동수급협정서(공동도급시) 원본 1부.
-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1부.

4.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

- 가.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교부한 “세부 평가기준”에 따라 평가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.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.(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)
- 다.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.
- 라. 최종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제372호)」 중 제2장의2 ‘기술·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’의 규정에 따릅니다. 단,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, 배점한도(1점)를 부여합니다.
- 마. 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) 중 제2장의2 기술·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(별표1)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.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{수행능력평가 점수(64) +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(1) + 지역업체 참여점수(3) + 경영상태(2) + 가격점수(30)}가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바.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.

5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, 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,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다. 평가서는 신안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라.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, 입찰참가 제한, 낙찰취소,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.
- 바.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,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,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, 기술용역입찰유의서, 기술용역일반조건, 용역계약특수조건,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(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)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아.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자.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,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,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차.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섬발전진흥과 해양시설팀 (061-240-841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